

## [브리핑] 권익위 접수, 한해 2천만건 국민민원시대, 국민권익위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2022. 3. 8., 국민권익위)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해결 주무부처로서 올 한 해 2천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 민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전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민원은 약 1,750만건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 국민콜 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 7천 건, 행정심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 5천 건 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충과 양극화의 심화, SNS 이용 확산 등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는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국민 민원이 2천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천만건에 달하는 국민의 민원, 즉 각종 불편사항과 불만, 궁금중에 대해 한 건 한 건 귀 기울여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한 공직자의 소극적 인식과 행태, 각급 기관의 책임 있는 민원해결을 위한 인프라 미비, 인력 및 여건의 한계 등으로 급증하는 국민의 민원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지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2천만 국민 민원시대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에 걸맞는 민원 해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원해결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천만건의 국민 민원! 민원해결 주무부처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책임지고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서 접수되는 국민의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① 권익위 권고수용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운영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각 부처기관의 권고수용률은 현재 약 96% 수준입니다. 앞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각 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② 집단민원 조정법 제정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민원 해결을 적극 챙기겠습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참여한 이해갈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집단고충민원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17~'21)간 국민권익위는 479건의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하여 14만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주인없는 부동산 매각 관련 민원',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민원',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지원 약속이행 민원'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한 대표적인 집단고충민원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집단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단민원 조정·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③ 각급 기관과의 옴부즈만 협력을 강화하여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현재 권익위는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찰옴부즈만, 국방옴부즈만, 공수처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주한 외국기업의 불편과 민원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필요한 경찰내사의 장기화에 따른 사건 관계인의 권익침해 방지 민원' 해결과 중소기업인들의 권익보호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정부 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전문 분야에서의 국민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한편,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옴부즈만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④ 권익위에 접수되는 한 해 2만여건의 행정심판 사건도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에 불복을 하지 못하고, 결과에 대해 행정기관의 자기시정을 유인하는 강력한 국민권익구제 수단입니다.

앞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현재 19.7%인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을 3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 관련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원의 경우, 2019년 10월 개소한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한 곳에서 한번에'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호사회, 세무사회, 의사회 등 전문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 민원에 대한 상담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로,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기능, 국민들과 함께 바꾸는 제도개선 기능입니다.

권익위는 민원의 개별적인 해결뿐 아니라 민원속에 담긴 민원 유발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 ② 국민생각함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의견수렴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대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께서 제안하는 정책개선안과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확인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 ③ 주요 제도개선 사례

작년의 주요 제도개선 사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전동킥보드·점자블록·친환경차 운영관리 개선’ 등입니다. 이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개선을 통해 ‘19~’20년간 3,370건이던 관련 민원이 ‘21년 331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④ 기획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권익위는 또한 국민다수가 제기하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통학로 안전 관련 빈발민원 분석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전국 1,371개 개선지점을 선정하여 500여개에 달하는 전국의 학교앞 통학로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절반이상 진행완료함으로써 빈발민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빈발민원에 대한 기획조사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제안 정책개선, 고충유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불합리한 정책

과 제도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 셋째로, 민원 해결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의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공직사회의 문화와 행태·인식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2천만건의 국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민원을 제일 먼저 듣고 해결하는 각급 기관의 민원 해결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확산으로 지방권익구제 기능 강화

권익위는 민원해결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민민원 해결을 위한 권익위와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의 음부즈만 설치 근거도 마련하여 각급 기관이 스스로 민원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② 권익위 평가를 통한 공직자 적극행정 독려

또한 권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적 국민민원 해결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 항목에 적극행정 구현 노력과 소극행정 실태를 반영하여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서비스평가를 개선하여 평가대상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각급 기관의 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③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권익위는 작년부터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권익위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서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담당자의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가 잘 처리되지 않고 다시 제기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기관이 적극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1,900여건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10건에 대해 적극 행정처리되었고 나머지 민원건도 해결과정중에 있습니다.

적극행정 관련 법령상 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에 따른 공직자의 처분은 징계면책이 적용되므로 민원담당자의 적극적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권익위는 이에 더해 국민의 적극행정 신청을 자발적으로 채택·실시하거나 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를 받고 적극 이행한 공직자와 공공기관에게 인사고과 및 포상, 성과급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를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이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권익위가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

### ④ “소극행정도 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200만 공직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청렴교육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국민민원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은 넓은 의미의 부패이며 청렴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게 민원해결 시스템도 디지털 국민권익플랫폼을 구축하여 획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① AI 국민신문고로 디지털 국민권익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이자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AI 국민신문고”로 혁신하여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② AI 국민신문고로 단순반복·질의성 민원을 신속·맞춤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15% 정도인 250여만건인 단순 반복, 질의성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단순 공금증과 질의, 유사한 민원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해야만 답변을 받는 불편이 있는데, AI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원의 발생 자체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과 관련한 정책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국민신문고 협업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080여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2,000개 기관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하여 국민의 이용편리성도 높일 것입니다.

④ 국민콜 110 AI 챗봇 기능을 도입하여 상담 품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콜 110 민원상담에도 AI시스템과 챗봇 기능을 도입하여 국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즉시 원스톱으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⑤ 민원빅데이터 분석 민원예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 중심의 민원 데이터만을 분석하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민간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사회 현안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원분석 및 예보를 통해 요소수 사태, 건물 붕괴와 같은 국민피해와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편과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완성을 위해 올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법적 기반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민원해결 주무부처로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될 2천만 건의 국민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민원담당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의 자세로 국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 “작년 한 해 국민 3명중 1명 국민권익위 문 두드려” 민원·신고 1,700만 건 접수·처리 결과 발표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소통 창구 통해 국민의견 들어

(2022. 3. 7., 국민권익위)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국민 3명 중 1명)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 국민고충 해결 ▲ 부패방지 정책 수립 ▲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행정심판 ▲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해 왔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국민권익위로 유입된 국민의 목소리는 1,700만 건으로, 이는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 건, 정부

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 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 5,000건순이었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1,089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싹뿍처럼 연결해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 인지도는 2011년 58.9%에서 2021년 84.3%로 급상승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의 기관별 처리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원이 42만 건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부패유발요인이나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대표사례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전동킥보드·점자블록·친환경차 운영관리 개선’ 등이 있다.

한편, 소관기관이 해결하지 못해 국민권익위가 일종의 항소심역할을 수행해 직접 처리한 민원이 지난해에만 약 6만 건, 현 정부 출범 후로는 20만 여건이었다. 최근에는 다수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민원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 한센인마을 주거환경·복지 개선 요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

지 매각 논란 등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479건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가 적극 조정·중재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약 14만 명에 달하는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또 여러 기관에 관련된 민원의 경우 '한 곳에서 한번에'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2019년 10월 개소해 8만 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행정심판 사건 약 2만 건, 현 정부 출범 후 총 11만 5,000건을 처리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만 2,000천건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한 해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접수·처리한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포함해 총 1만 5,000여 건이다.

부패·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현 정부 출범 후 248건의 보호조치를 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은 232억 원이다. 특히 공익신고로 회복 또는 증대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1조 1,165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부패·청렴교육에도 매진해 지난해 기준 약 8만 명, 현 정부 출범 후 약 19만 명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공공기관들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BIS SUMMIT 2022' 기조연설로 청렴윤리경영 실천 필요성 강조

- 국민권익위는 연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도입 예정으로, 기업·공기업 등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 -

(2022. 3. 25., 국민권익위)



BIS Summit 2022 반부패 서약식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5일 'BIS SUMMIT 2022'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와 기업경영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 BIS SUMMIT :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I)'가 후원하는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BIS)'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공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최신 반부패 아젠다 및 기업 투명성 제고 방향 등을 논의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5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나 경영부문 관련 지표는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청렴윤리경영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5년 연속 상승했으나 경영부문 관련 지표는 5년간 답보 상황이다.

\* '경영활동 관련 부패(IHS Markit)' 59점, '공적자금 유용·계약 등 뇌물관행(EIU)' 55점

또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 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E(환경)과 S(사회)보다 뇌물, 부패, 기업 지배구조 등 'G(거버넌스)' 측면이 약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하고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며, 올해는 기업의 글로벌 부패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는 국제기구 및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해외부패방지법 등의 핵심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도로, 학계·시민단체·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설계하였으며, 환경 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관리, 모니터링·개선, 제재·인센티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는 기업에도 매뉴얼을 배포하여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적극 도입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등 대응하는데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되면 실질GDP가 약 2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만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부패 없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 부패신고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 피신고자 무고·명예훼손 우려 해소와  
신고자 보호의 법익균형 도모할 것 -

(2022. 3. 17., 국민권익위)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동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또는 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중순 시행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면서도 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 [신고자에게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안내]

우선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 등을 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한다.

####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 부패행위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

만약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부여하여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한편,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양측의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부패신고 조사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신고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중앙·지방·교육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등  
총 573개 공공기관 대상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 객관적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모두 반영해 평가

(2022. 3. 3.,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과 주요 평가방향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573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았던 기관이 273개인 것에 비해 올해 평가대상 기관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

합계 (개)	중앙 행정	시·도 경찰청	자치단체(243)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199)				국공립 대 학	공공 의료	
			광역	기초(226)			공기업	준정부 기관	지방 공사공단	기타			
				시	군								구
573	46	18	17	75	82	69	17	36	94	39	30	33	17

※ 교육지원청(176개) 전수 포함,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는 시·도 교육청 결과에 포함

중앙행정기관(46개)과 광역·기초 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4개)은 모두 올해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특히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 지원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맞춰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를 시범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광역 지방 공사·공단과 교통·시설관리 관련 광역 지방 공사·공단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전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대한 평가도 확대했다.

국공립대학은 입학정원 규모가 작은 기관까지 포함해 지난해보다 17개 증가한 33개 기관,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17개 기관이 대상이다.

< '21년 대비 주요 변경·반영 사항 >

구 분	전체대상	기초지자체	준정부기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21년 청렴도·시책평가 공통	273개	42개	52개	16개	13개
'22년 종합평가	573개	226개(전수)	94개(전수)	33개	17개

※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 시범 평가 실시

종합청렴도를 구성하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의 평가 내용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평가를 강화한다.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방향 >**

구 분	주요 내용
청렴체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하고, 측정항목 및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등 개편방안 내용을 반영</li> <li>- 조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관별 외부 측정업무 전면 재검토</li> </ul>
청렴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체계를 재구성하고, 평가 세부지표 및 배점(안) 마련</li> <li>- 시책 효과성 평가 신규 도입, 신규·소규모 기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체계 적용</li> </ul>
부패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감점 반영 비중과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사건은 정성평가를 추가로 실시해 평가 강화</li> <li>- 평가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등 소통 확대</li> </ul>

(청렴체감도) 공공기관의 외부 업무과정은 국민이, 조직내부 운영 전반의 청렴수준은 내부직원들이 각각 체감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정도를 설문조사로 측정하며, 기관별 측정대상 업무 등 측정 범위와 항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할 예정이다.

(청렴노력도)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의 실적과 성과를 정량·정성 평가하고, 실제 반부패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한다.

각급 기관의 개선 노력이 직접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만큼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춰 노력도 평가체계와 지표도 전면 정비한다.

올해 5월 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정착·운영되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기반 구축 지표 ▲적극행정 구현 노력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등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방향 및 취약분야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반

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등 부패방지 제도 구축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등 청렴도 제고에 핵심적인 기존 지표는 배점을 상향하거나 평가기준을 보완해 강화한다.

(부패실태)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정량·정성 평가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결과에서 감점하고 감점 대상사건 범위와 감점 비중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패실태를 엄정하게 평가한다. 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에게 확인·소명할 기회도 부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 후속조치로 올해 세부 평가내용과 기준을 담은 평가 실시계획을 5월 중에 수립해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 수준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노력까지 함께 보는 종합청렴도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다.”라며, “국민들께도 보다 종합적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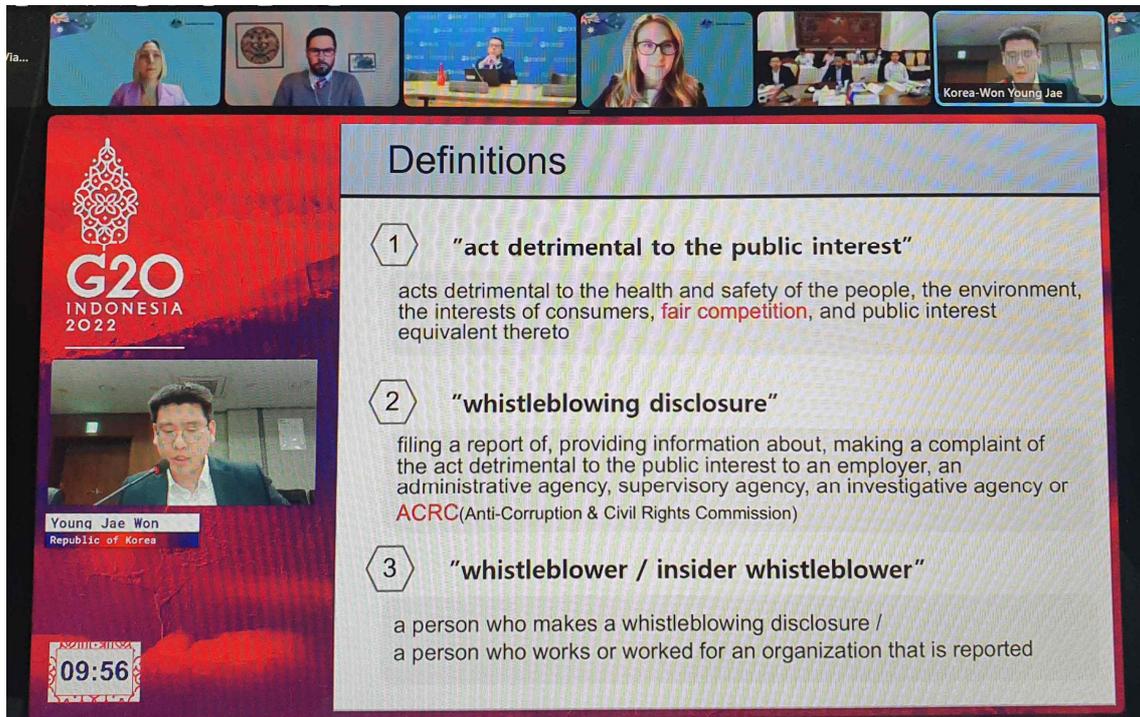
이어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며 반부패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국제사회와 공유

- 29일,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에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발표 -

(2022. 3. 29., 국민권익위)



2022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반부패 국제 공조를 위해 개최되는 G20 반부패실무그룹(ACWG,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회의에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 29일 발표했다.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올해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는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호주를 비롯한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OECD를 비롯한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가했다.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한국의 공익신고에 해당해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및 구체적인 신고자 보호 방법 ▲우리나라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현황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향후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2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는 28일부터 31까지 영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반부패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2022년 이행보고서 작성 및 반부패 원칙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2년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는 이번 1차 회의 이후 두 차례 더 개최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 권고...기관 수용률 98.7% 달해”

22일 제도개선 추진 실적 국무회의 보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 발간·배포 -

(2022. 3. 22., 국민권익위)



지난 5개년 제도개선 추진 실적 발표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위자료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주민 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20.9. 국민신문고)
- # “공공기관이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21.8. 국민생각함 대국민 설문조사 94.3.% 찬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해 22일 발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권익 침해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진단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사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작년 2월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도록 권고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작년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공립대학 내 주차요금 감면 등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급식단가를 법정화해서 지역편차 없이 양질의 식사권을 보장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등이 있다.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한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게 하여 연간 천억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조례상 근거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을 개선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국·공립대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학생지도비용 지급을 제한해서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등록금 부담을 경감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22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 공감대와 정책 개선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주요 사례 100선을 선정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해 적극행정 및 반부패·국민불편 해결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입법 지연 등 다양

한 이유로 미이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이행전략회의·컨설팅, 국무회의 보고 및 입법 제안 등을 통해 과제 이행을 독려하여 조속히 제도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 여파 속에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민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한센인 권익보호에 발벗고 나서... 한센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

- 한센인 권익보호, 정착촌 환경·복지 등 고충 전담 해소, 한센인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2022. 3. 3.,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은 물론, 이들의 고충 상담과 문제해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센인 민원 전담센터(이하 한센옴부즈만센터)'를 3월 출범했다.

한센인 정착촌은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다수 부처와 관련돼 있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대부분이라 집중적인 상담과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전담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센옴부즈만센터를 설치·운영해 한국한센총연합회 등 한센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팀이 정착촌 현장 방문상담을 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한센옴부즈만센터를 통해 지난해 각 기관에 권고한 개선 종합대책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82개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12월 20일 복지부 등 9개 관계 중앙부처, 66개 담당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올해 1월 27일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한센 유관 단체도 개선 종합대책 이행과 각 정착 마을의 고충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 국민권익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한센옴부즈만센터 운영을 통해 개선 종합대책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한센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등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센인들의 권익침해나 정착촌 현안 고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한센옴부즈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http://www.acrc.go.kr))

△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한센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팩스: 044-200-7971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국민권익위,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 강제퇴거는 가혹”

- 중앙행심위, 체류기간 지났어도 2세 유아에 대한 육아, 경제사정 등 인도적 고려 필요 -

(2022. 3. 14., 국민권익위)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사증면제(B-1)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육아 등의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취소했다.

외국인 A씨는 2017년 4월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 A씨는 2018년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2019년 3월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했다.

이후 A씨는 결혼비자를 신청했으나 남편의 재산 소명이 부족해 결혼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 6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했다.

ㄱ씨는 2019년 8월 아들을 출산한 후 산후조리 등으로 경황이 없어 사증면제(B-1)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년 9월까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했다.

이후 ㄱ씨는 남편의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던 중 불법체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ㄱ씨는 “아들이 기관지염, 구내염 등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몸이 불편한 남편이 갓난아이를 보살펴야 하고 자신의 인도적인 권리도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불법체류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므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친모인 ㄱ씨가 2세 미만 유아를 돌볼 필요가 있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보다 ㄱ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ㄱ씨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